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7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7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7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폐지이유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 초기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가 제정(1973. 7. 1. 조례 제46호)되어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 설정 등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이 정착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1호
의결 년월일	2006. 7. 27 (제129회)

제출년월일 : 2006. 7.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폐지이유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 초기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가 제정(1973. 7. 1. 조례 제46호)되어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 설정 등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이 정착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침 부

-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으로 통일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간의 사업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협의
4. 공장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새마을지도자협의회운영 및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자연보호운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내외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된다.

③부시장, 경찰서장, 새마을업무담당과장, 농업업무담당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새마을운동유관기관, 단체의장과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연합회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및 인사)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③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직원) ①협의회에 새마을운동 분야에 조예가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 약 간명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며 협의회에 보고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다만, 위원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더 둘 수 있다.

④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실비변상) 전문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3. 7. 1 조례 제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7. 24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2. 28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7. 15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30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 23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13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4.12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